##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원이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9541 발의연월일: 2023. 1. 18.

발 의 자:김원이ㆍ기동민ㆍ박상혁

서영석 · 송갑석 · 신정훈

어기구 • 우원식 • 조오섭

최혜영・홍성국 의원

(11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·관리·치료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·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감염병환자, 의료인, 의약품 및 장비 등을 관리하는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, 주민등록전산 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과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등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하고 있음.

하지만, 결핵의 예방 및 관리사업 등은 「결핵예방법」에 따라 결핵 통합관리시스템으로만 관리되고 있으나, 현행법은 결핵을 제2급감염병 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 정 보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에서 「결핵예방법」에 따른 결핵통합관리시스템과 정보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

40조의5제6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###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0조의5제3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「결핵예방법」 제7조제2항에 따른 결핵통합관리시스템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0조의5(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	제40조의5(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
스템) ①·② (생 략)	스템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감염병정보시스템은 다음	③
각 호의 정보시스템과 전자적	
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.	
이 경우 연계를 통하여 수집할	
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감	
염병환자등에 대한 예방·관리·	
치료 업무를 위한 것으로 한정	
한다.	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<u> &lt;신 설&gt;</u>	6. 「결핵예방법」 제7조제2항
	에 따른 결핵통합관리시스템
<u>6.</u> (생 략)	<u>7.</u> (현행 제6호와 같음)
④·⑤ (생 략)	④·⑤ (현행과 같음)